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행 정 민 원 과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선산문화회관 사용료 관련 규정과 그 외 사항을 정비하여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문화회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납부기한의 명확화 등 사용료 관련 정비(안 제8조제1항, 별표)

나. 인용조항 삭제에 따라 실효된 조항 정비(안 제8조제5항)

다.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~제6조, 제8조~제12조, 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선산문화회관”을 “구미시 선산문화회관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미시선산문화회관”을 “구미시 선산문화회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행사참여, 전시물관람”을 “행사 참여, 전시물 관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회관운영”을 “회관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회관시설”을 “회관 시설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“위탁기간”을 “위탁 기간”으로, “갱신기간”을 “갱신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회관사용허가신청서”를 “회관 사용허가 신청서”로, “변경사유”를 “변경 사유”로, “변경사용”을 “변경 사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 하는”을 “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”를 “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전단 중 “회관운영”을 “회관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
중 “공연연습”을 “공연 연습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기준시간”을 “기준 시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회관시설”을 “회관 시설”로, “관람예정인원”을 “관람 예정인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총사용료”를 “총 사용료”로 한다.

제12조제4호 중 “회관시설관리”를 “회관 시설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밖에,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3호 중 “회관시설”을 “회관 시설”로 한다.

별표의 비고란 중 “토요일 오후”를 “토요일”로, “초과시”를 “초과 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산문화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[별표]

시설사용료(제8조 관련)

시설명	사용단위	사용료	비고
대강당 (2층)	1일(08:00~18:00)	100,000원	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20%를 가산한다. ○ 초과 시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25%를 가산한다. 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.
	오전(08:00~12:00)	50,000원	
	오후(13:00~17:00)	60,000원	
	야간(18:00~22:00)	70,000원	
소회의실 (1층)	1회(2시간 이내)	30,000원	
프로젝터 대여	1회(2시간 이내)	20,000원	○ 초과 시는 1시간마다 10,000원을 가산한다.
조명시설 대여	1회(2시간 이내)	20,000원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구미시 선산문화회관----------.
제2조(명칭) 명칭은 구미시선산문화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2조(명칭) ---- 구미시 선산문화회관----------.
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관람”이란 행사참여, 전시물관람 등 회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	제4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 행사 참여, 전시물 관람 ----------.
제5조(관리) ① (생 략) ②관리실은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회관운영 계획 수립 2.·3. (생 략) 4. 그 밖에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	제5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회관 운영 -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 회관 시설----------
제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	② ---------- 위탁 기간 ----------. ------ 갱신 기간------.
제6조(사용허가) ① (생 략)	제6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회관 사용허가 신청서------- ---------- 변경 사유------ ----- 변경 사용 ---------- ----------.
③ 삭 제	
④사용의 허가는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해당하는 ---------- 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사용료) ①제6조에 따른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(이하 “기본사용료”라 한다) 전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8조(사용료) ① ---------- ---------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사용예정일

	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.
②회관의 사용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회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퇴관시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	② ----------회관 운영----------.
③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	③ 공연 연습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는 1일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.	<삭 제>
⑥사용시간이 신청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	⑥ ---------- 기준 시간----------.
제9조(관람료) 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 행사의 내용, 관람료, 관람예정인원,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	제9조(관람료) ① 회관 시설---------- 관람 예정인원----------

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-----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·난방 등의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---. 다만,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(생 략)	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.	②----------.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	1. -------- 총 사용료-------- 총 사용료----------.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	2. ----------

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	총 사용료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총 사용료---- ---------- -----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	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회관시설관리 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	4. 회관 시설관리 ---------- ----------
5. 그 밖에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	5. -- 밖에 ---------- ----------
제14조(입장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	제14조(입장의 제한)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회관시설 안의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	3. 회관 시설 ---------- ----------

소지한 사람 4. (생 략)	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 략)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 략)

소 관 부 서		행정민원과
입	과 장	김 창 주
안	팀 장	김 응 종
자	담 당 자	임 이 랑 (480-5712)